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Q.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표시방법과 행정처분 등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계도기간이 끝난 19년 8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으니 판매점에서는 달걀 판매기간 등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란일자 표시방법 -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4자리)	(예시) 7월 29일 → 0729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예시) M3FDS *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사육환경번호(1자리)	(예시) 2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	

-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 수집 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품에 표시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익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영업이 없는 판매자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장성영 기자), wg1167@hanmail.net(임설희 기자)